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#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허창원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8일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

4. 주요내용

- 정기회 개최일정 및 방법 조정(안 제10조)
  - 정기회 회의 일정 : 매년 6월, 12월 → 연 2회
  - 방법 : 후단 신설(긴급·경미 안건은 서면 의결)
- 유효기간 연장(부칙 제2조)
  - 2019년 12월 31일 → 2024년 12월 31일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기회 개최일정 및 방법을 변경하고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

위해 기금 조성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-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나 체육진흥기금 조성 후 사용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